

2026년 8월호

정운관세법인 소식지

2026년 8월 정운 소식

1) 관세동향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안내(7.16시행)

세관장이 확인하는 물품 관련 규정, 이전과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1. 마약류(오·남용우려) 의약품 확인 기준이 더 명확해짐

원래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게 그 의약품이다"라고 판단할 근거 규정이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의 관련 고시(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를 꼭 집어서 명시함으로써, 어떤 기준으로 지정된 의약품인지 통관 현장에서 헛갈릴 여지를 줄였어요.

2. 외국환거래법 관련 물품, 세관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

지급수단(현금, 수표 등) 관련해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신고서를 세관장이 확인하던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항목이 통째로 삭제. 더 이상 세관장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3. 화학물질 관련 용어와 서류가 변경

"유독물질"이라고 부르던 걸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화학물질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따라간 것), 제한물질 수입할 때 제출 서류도 허가증뿐 아니라 신고증도 인정하도록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4. 정부 부처 이름이 업데이트 됨.

작년(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고시에도 반영. 단순 명칭 정리

5. 세관장 확인이 필요해진 품목들이 신설.

-에너지 절약 관련 기기 중 기존엔 삼상유도전동기(모터의 일종)만 확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공기압축기와 펌프도 추가.

-체외진단의료기기(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등)관련 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이 물품들도 통관 시 확인 대상에 새로 포함.

1) 관세동향



6. 통관을 온라인 포털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도 증가

체외진단의료기기,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관련 물품이 새로 온라인 포털 신청 대상에 추가됐고, 예전에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부르던 법 이름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관련 문구도 그에 맞게 정리.

7. 그 외 수천 개 품목 코드(HSK) 단위의 세부 개정

이건 좀 더 기술적인 영역인데, 수출입 품목마다 붙는 세부 코드(HSK 10자리) 기준으로도 요건 정비. 수입 쪽에서만 1,000개가 넘는 품목이 조정됐고, 그중 상당수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이 처음으로 수입요건 체계에 편입된 경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별표2 (12) 외국환거래법	세관장확인대상 포함	항목 삭제	대상 제외
별표2 (14)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허가증만 인정	인체등유해성물질 / 신고증도 인정	용어,서류변경
별표2 (25)(30)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조직개편
별표2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삼상유도전동기만	공기압축기, 펌프 추가	대상 확대
별표2 (4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없음	신설 (표준통관예정 보고 등)	신규 법령 반영
별표3 수입 (30)(31)	없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야생생물법 신설	포털 신청대상 확대
별표3 수출 (8)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명칭 현행화
제7조 ②-1호 아목	근거규정 불명확	식약처 지정 규정 명시	근거 명확화
부칙	없음	신설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최초 도입

< 상세 사항 아래 링크 참조 > // 붙임 파일은 메일에 첨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502>

[2] 무역통계부호 상 「산업단지부호」 개편에 따른 부호 추가 신설



관세청은 수출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해 '26.4.3.자로 무역통계부호 상 '산업단지부호' 295개*를 1차 신설한 바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산업단지부호가 기본적으로 999로 되어있지만, 제조자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 부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수출실적이 추가로 확인된 산업단지의 발굴·등록을 위함이며 수출실적이 확인된 31개 산업단지부호를 추가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 수출기업 지원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1. 산업단지별 수출액은 이미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은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국가승인통계(통계법 제18조, 승인번호 제399003호)로 발표하고 있고, 이 통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 수립, 공장입지 선정 등 기업 경영계획 수립, 연구기관 연구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통계항목에는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등이 포함됩니다.

2. 국가산업단지는 수출 실적을 분기별로 이미 추적중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생산, 수출, 가동률 등을 분기별로 조사·제공합니다. 즉 산업단지 단위 수출 데이터를 정부가 이미 정책자료로 쓰는 체계가 있습니다.

3. 산업단지 단위 지원사업이 실제로 운영중.

KICOX 홈페이지 공고 기준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산학혁신 파크 등), RE100 이행 및 LCA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외에도 산단환경개선펀드, 탄소중립 융자지원사업 같은 산업단지 단위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시 운영중입니다.

관세청 수출신고서에 산업단지부호를 기재 >> 관세청 무역통계(HSK 품목·금액 기준 정밀 데이터)가 산업단지 단위로 집계 가능해짐 >> 기존 KICOX 통계(생산액·고용 등)와 결합되면 산업단지별 수출 기여도가 더 정밀하게 파악됨 >> 이 데이터가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탄소중립 용자, 환경개선펀드 등 산업단지 단위 지원사업의 배정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 부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수출신고를 한다면 해당 산업단지 지원률이 높아져 수출업체에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부호를 파악하여 관세법인쪽에 안내해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고환율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확대 시행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 해야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내용: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피해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즉시 경영 안정 지원(신청 시, 단, 관세조사 유예·연기는 제외)

*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2025년 한해 또는 2026년 1분기 금액 기준)

분야	원칙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 이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 6회 범위 내 분납 허용
채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채납사실 통보 등	통관허용, 채납사실 통보 유예 등
수출환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신청 방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통관지 세관(불임 참조)

☞ UNI-PASS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담보/제세 납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기타 문의 : (제도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4

[4] 관세청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발간등록번호
11-1053105-100001-09

whatsnew.mofe.go.kr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428페이지의 정책 안내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출처: 행안부)

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관세청·재정경제부, 2026.7.1)

기납증 등 관세환급 증명서를 세관장 심사 없이 성실업체·관세사가 관세청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자율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연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발급 업무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 편의가 높아져요.

(1단계: 자율 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 세관장에 신청 >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 관세환급 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발급)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관세청, 시행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으면 검사비용 지원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고, 팩스·이메일 제출(고령자 등 전산 사용 어려운 사용자)도 허용. 전산 오류 등으로 마감 을 놓쳐도 구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3.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식약처, 20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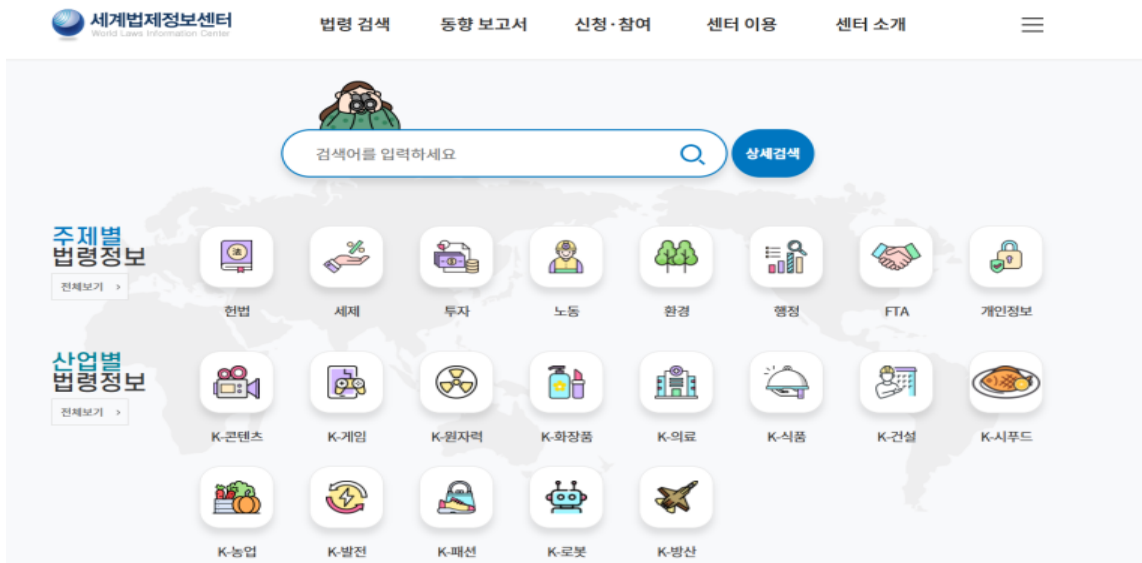
구강관리용품 등 12개 위생용품 품목은 AI 규칙기반 전자심사로 서류검사 자동 처리. 기존 최대 2일 걸리던 서류검사가 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4.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기정통부, 2026.10.22)

국내 유통 없이 수출만 하는 전파차단장치는 제조 인가 대상에서 제외. 인가 준비에 걸리 던 약 45일이 사라져 K-방산 수출 타임라인이 단축됩니다.

1단계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를 통한 수출허가 신청 >> 2단계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임 이 확인되면 제조인가가 면제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5.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2026.12)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식품법령·환경산업 법령 등 여러 사이트에 흩어진 해외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6.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관세청, 2026.7.1)

선박용품 공급업체는 선사 소유의 수리용 부품(자기 화물 아님)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됨. 외부 유료창고 이용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7.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해수부, 2026.6.29)

냉동 고등어·오징어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 5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유통업체는 양도 후 5일 이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8.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위사업청, 2026년 하반기 예정)

수출허가 면제 방산물자의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발급이 오래 걸리는 최종사용자증명서 준비 시간이 확보됩니다. (d4b.dapa.go.kr 방산수출입 지원시스템)

9.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관세청, 2026.8.15 오픈 예정)

해외직구 전용 신고서·사전 거래정보 입수·일회용 인증번호 등을 도입해 위해물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즉시 알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본격 적용 안내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유통되는 포장재의 감축·재사용·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EU 역내 생산품뿐만 아니라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의 포장에도 적용됩니다.

포장재 해당 여부 - 실제로 제품의 보관·보호·취급·배송·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3가지 기준으로 개별 판단 - 부속서 I은 예시목록일 뿐, 기능과 의도된 용도로 판단	포장 구분 기준 (판매·그룹·운송) - 판매포장: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단위 포장 - 그룹포장: 여러 판매단위를 묶어 전열·재고관리 용이 - 운송포장: 운송·취급 시 손상 방지하는 외부 포장	제조업체 vs 생산자 - 제조업체: 포장 설계·주문 주체(기술·라벨링 책임) - 생산자: 포장된 제품을 해당 회원국에 최초로 공급하는 자(EPR 등 의무 부담) - EU 최종 사용자 대상 직접판매 시에도 생산자 해당 가능	수입자 및 지점 - 수입자: EU에 설립된 별도 법인만 인정 - EU 내 지점(branch)은 별도 법인격이 없어 수입자/유통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자회사 설립 또는 공인 대리인 지정 필요	기술자료 및 수입자 의무 - 공급업체: 제조자가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의무 - 제조자: PPWR 준수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 - 수입자(26.8.12~): 적합성 확인, 수입자 정보 표시, 문서 구비 의무
---	--	---	--	--

- 1)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적용
- 2)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단일 PFAS 25ppb, PFAS 합산 250ppb, 총불소 50ppm 기준 적용
- 3)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재활용 설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
- 4)포장 및 라벨링: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2028년부터 EU 조화 라벨 적용 예정
- 5)생산자책임(EPR): EU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원국별 EPR 등록 및 공인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 필요
- 6)기술자료 관리: 포장재의 재질, 우려물질, 적합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망 자료 및 기술문서 확보 필요

따라서 대EU 수출기업은 제품 포장재가 PPWR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포장재의 재질·PFAS 및 우려물질 함유 여부, 재활용 가능성, 라벨링 및 관련 기술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 성분 및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EU 수입자와 규정 준수 책임 및 EPR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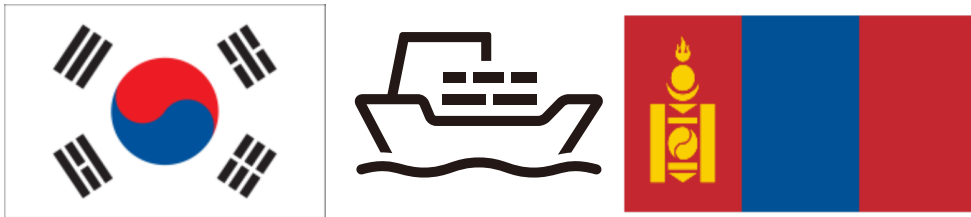
PPWR의 세부 의무 중 일부는 2028~20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향후 EU 위임법 및 시행령 등 후속 규정도 지속적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2. FTA 이슈



[1]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대한민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시장개방 이견 때문에 중단되기도 하고 난항이 좀 있었으나 정상회담 직전에 막판 밤샘 협상으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1.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임.
 - 이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덕분에 국내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를 훨씬 싸고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을 전망.
- 에너지는 물론 광물 분야 협력 근거도 협정문에 딱 박아둬서 자원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예정임.

2. K-소비재(뷰티·푸드) 몽골 진출 대폭 확대

이미 몽골에는 CU(600개 이상), GS25(300개 가까이), 이마트 등 우리 유통 채널이 많이 있어, 한국 제품 인기가 높음.

이번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화장품: 즉시 관세 철폐/라면, 조미김: 5년 내 단계적 철폐)

원산지 인정 기준도 유연하게 합의해서 한국산 인정받기 쉬워짐. (단, 우리 농축수산물물은 엄격하게 보호하기로 함)

3. 인프라·건설 및 산업 협력 다변화

단순 교역을 넘어서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협력까지 협정에 명시함.

- 화물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즉시 관세 철폐
- 중고차(4~6년식): 5년 내 관세 철폐
- 몽골 현지의 인프라 개발 수요량 우리 기업들 중장비/의료 기술력이 맞물려 수출 성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표 및 상세 사항 아래 링크 참조 >

[https://fta.motir.go.kr/ftamain/promo/news/doc/1/view/index.jsp?](https://fta.motir.go.kr/ftamain/promo/news/doc/1/view/index.jsp?seqno=145994&searchType=01&searchTitle=&pageNum=1&pageSize=10)

[seqno=145994&searchType=01&searchTitle=&pageNum=1&pageSize=10](https://fta.motir.go.kr/ftamain/promo/news/doc/1/view/index.jsp?seqno=145994&searchType=01&searchTitle=&pageNum=1&pageSize=10)

2. FTA 이슈



[2] '26.07.24일자로 미국 수입물품 글로벌 관세 만료 및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



미국이 기존에 적용하던 '글로벌 10% 관세(무역법 122조)'가 7월 24일 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분야에 대한 신규 301조 관세를 전격 발표했음. 미 동부시간 기준 7월 24일 00시 01분 수입신고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별도 종료 기한 없이 무기한 유지될 예정입니다.

1. 한국은 '12.5% 관세 상한제' 적용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10~12.5%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 상한제'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

부족한 만큼 301조 관세가 추가되어 총관세율이 12.5%로 맞춰짐.

- 기존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

301조 관세가 추가되지 않고 기존 관세만 적용됨.

* MFN(최혜국대우) 관세란?

별도 협정이 없을 때 기본으로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을 의미함.

2. 면제되는 품목

다행히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 면제 품목들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 IT 제품, 텅스텐·금 등 광물 원자재, 석탄 등 에너지, 의약품, 농림수산물, 철강·알루미늄(232조 적용 품목) 등

경과 조치: 7월 24일 이전에 이미 선적되어 운송 중이었으며 7월 28일 이전에 수입 신고된 화물은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관세청 FTA포탈

2. FTA 이슈



3. 현지 분위기 및 향후 전망

법적 논란: 미국 현지 학계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법 301조의 취지를 넘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라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 리스크: 이번 조치와 별개로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조사 대상 16개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 발표될 최종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관세율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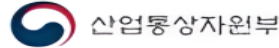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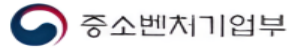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혹은 면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USTR 연방 관보나 CBP(미 국경백관세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품목 번호(HS Code)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세청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일은 400페이지 이슈로 링크로 대체 드립니다 : <https://share.google/5E2RUgr2k1h8Nevo9>

*** 소식지 내 관련 개정문 및 부칙관련은 메일상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6개 • Gmail에서 검사함 ⓘ ⬇️ Ⓜ️ Drive에 모두 추가

3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정운관세법인 수출 지원 서비스

최대 70% 지원

수출 바우처는

중소, 중견기업이 일정 자비 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운관세법인은 수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s@jwccs.com

교육

- 1:1 맞춤 무역 실무 교육
- 산업 맞춤 HS CODE 교육
- 관세 환급 교육

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
- FTA 사후 검증, 원산지 조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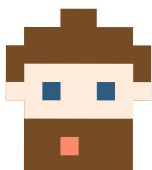
수출통관

관세 환급

심사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 AEO
- 기업심사 컨설팅



무역종아: 정운 수출 바우처 통해 수수료 절약
했었어서 또 도전하려고요!

함께성장하는 정운관세법인 입니다:)

1

3. 소식지 인사



본 소식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511-5926
E-mail : doc@jwccs.com

